

2022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공고문

□ 개요

- 사업목적 :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해외순회공연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
- 신청대상 : 국내 공연예술단체 (공연예술, 전통예술)
 - ※ 단체 : 민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- 신청가능사업 : 2개 이상 해외기관에 초청받아 진행되는 해외순회공연사업
 - ※ 필수조건
 - 한국공연예술단체를 합당한 조건(공연료 필수)으로 초청한 사업
 - 2022년 6월 말 ~ 12월 중 개최 및 완료되는 사업
- 공모기간 : 2022년 5월 3일(화) ~ 5월 19일(목) 18:00 마감
 - ※ 마감시간 이후에는 이메일이 수신되었다 하더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.

□ 공모세부내용

- 공모일정

공모기간	심사	결과공고	지원대상 사업기간	비고
'22년 5월 3일(화) ~ '22년 5월 19일(목)	'22년 5월 4주 예정	'22년 6월 1주 예정	'22년 6월 말 ~ '22년 12월	

구분	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																					
신청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개 이상의 해외기관에 초청받아 투어를 진행하는 국내 예술단체 * 투어는 출국 이후, 2개 이상 도시의 공연장 혹은 축제에서 연속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의미함 • 2022년 6월 말 ~ 2022년 12월 중 시행·완료되는 사업에 한함 • 해외 초청 측이 한국 공연예술단체에게 공연료를 포함한 합당한 초청조건을 제시·이행하는 사업에 한함 																					
우선지원 고려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청기관의 해외파급효과 및 기여도 높은 사업 • 투어장소의 수와 공연 횟수가 많은 사업 																					
지원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극, 무용, 복합, 다원, 음악 등 공연 및 전통예술 전반 																					
지원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경상보조 • e나라도움 사용 및 자부담 필수 ※ 세부내용은 공모신청서 참고 																					
접수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메일 csk@gokams.or.kr 로 이메일 접수 메일 제목 : '단체명' 2022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※ '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신청서'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, 기타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 ※ 개인 아닌 단체만 신청 가능 (단체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를 의미함) ※ 마감시간 이후에 이메일 수신 시 접수 불가 ※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																					
제출 서류	필수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센터스테이지코리아 국내공모 신청서 1부 (PDF 파일 송부시 한글 파일 필수 제출) 2. 초청장(초청조건 명시) 또는 공연계약서 사본 1부 *초청조건 : 공연료, 공연 횟수, 공연장소 3.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 사본 1부 4. 화물운송비 견적서 제출 (해당시 제출) ※ 필수자료 미 제출 시,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																				
	선택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초청기관 영문소개서(기관별 각 1부, 자유양식) • 단체 주요 성과자료 (5페이지 내외, 자유양식) 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책정지원 : 최대 30,000천원/단체 • 항공료(항공기준금액 X 투어인원) + 화물운송비(일부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국제항공료는 한국↔해외 왕복구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투어 연계 공연을 위해 각 국가 간 이동시, 책정된 지원금 내에서 국외항공 인정 2) 국제화물운송비는 운송업체의 직인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(일부 지원) • 지원 항공료 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간</th> <th>항공기준금액/1인(천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남미</td> <td>2,100 - 2,300</td> </tr> <tr> <td>북미</td> <td>1,900 - 2,100</td> </tr> <tr> <td>유럽</td> <td>1,400 - 1,700</td> </tr> <tr> <td>중동</td> <td>1,900 - 2,100</td> </tr> <tr> <td>아프리카</td> <td>2,000 - 2,200</td> </tr> <tr> <td>오세아니아</td> <td>1,900 - 2,100</td> </tr> <tr> <td>서남아시아</td> <td>1,400 - 1,600</td> </tr> <tr> <td>동남아시아</td> <td>800 - 1,000</td> </tr> <tr> <td>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 등)</td> <td>600 - 8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	구 간	항공기준금액/1인(천원)	중남미	2,100 - 2,300	북미	1,900 - 2,100	유럽	1,400 - 1,700	중동	1,900 - 2,100	아프리카	2,000 - 2,200	오세아니아	1,900 - 2,100	서남아시아	1,400 - 1,600	동남아시아	800 - 1,000	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 등)	600 - 800
	구 간	항공기준금액/1인(천원)																				
중남미	2,100 - 2,300																					
북미	1,900 - 2,100																					
유럽	1,400 - 1,700																					
중동	1,900 - 2,100																					
아프리카	2,000 - 2,200																					
오세아니아	1,900 - 2,100																					
서남아시아	1,400 - 1,600																					
동남아시아	800 - 1,000																					
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 등)	600 - 800																					
자부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 집행과 함께 단체 자부담 집행 및 정산 필수 • 총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 자부담 필수 • 자부담은 신청사업과 관련 있으며 증빙 가능한 항목 중 아래에 한하여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건비, 운영비, 여비 등 •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되어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 • 세부내용은 공모신청서 참조 																					

□ 심사 및 선정

- 심사내용
 - 행정검토 : 지원 가능대상 여부 및 첨부서류 제출현황 검토
 - 서면심사 :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위원(외부전문가 3~4인) 서면 심사, 지원여부 및 지원금 확정
- 심사기준
 - 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및 중장기 발전에 미치는 정도(30%)
 - 해외초청기관과의 인지도 및 초청조건 적절성(30%)
 - 사업계획의 타당성, 충실성, 실행가능성(20%)
 - 신청사업의 국내외 파급효과(20%)

□ 결과발표

- 발표일 : 2022년 6월 1주 예정
- 발표방법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, 더아프로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공지

□ 지원제한 대상 및 사업

- 기획재정부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7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제4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제1항 제1호 바~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불공정행위에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국제교류재단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는 사업
- 국·공립(도, 시, 군립)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사업
-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
- 학교, 학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
- 단체가 아닌 개인이 지원하는 사업
- 해외 초청기관이 한국공연예술단체에게 공연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 및 쇼케이스
- 한국 측에서 극장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사업
- 1개 공연예술단체의 1개 해외공연장 초청사업(개막작 혹은 폐막작 등 주요 무대에서 소개하는 경우 제외)
-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사업
- 해외 한인회 등에서 교민 대상 개최하는 사업

□ 문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기반팀
- 이메일 : csk@gokams.or.kr
- 전화 : 02-2098-2987